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공 학 석 사 학 위 논 문

공무원재해 예방 사업의 현황 분석



2020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안 전 공 학 과

서 상 범

공 학 석 사 학 위 논 문

공무원재해 예방 사업의 현황 분석

지도교수 : 장 성 록

이 논문을 공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안 전 공 학 과

서 상 범

서상범의 공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 년 2 월 21 일



위 원 장 공학박사 이 의 주 (인)

위 원 공학박사 서 용 윤 (인)

위 원 공학박사 장 성 록 (인)

목 차

제 I 장 서 론	1
1.1 연구의 필요성	1
1.2 연구의 목적	4
제 II 장 연구 방법	5
제 III 장 연구 결과	8
3.1 현황 및 사례 분석	8
3.2 설문조사 분석	18
제 IV 장 결 론	37
참고문헌	40

표 목 차

Table 1. Total status of survey respondents	7
Table 2. Disaster Prevention Program in Domestic Company	12
Table 3. Disaster Prevention Program in Advanced Country	17
Table 4. Survey Responder's Properties	19
Table 5. Questions and Results Related to Public Officer's Accident Compensation Act	21
Table 6. Risk of Work and Equipment	23
Table 7. Frequency of Job Stress	24
Table 8. Importance of Accident Prevention Activities and Safety Education	26
Table 9. Needs to Accident Prevention	28
Table 10. Needs to Accident Prevention by Service Field	31
(Business)	
Table 11. Needs to Accident Prevention by Service Field	32
(Program)	
Table 12. Risk of Work and Equipment by Service Field	35
Table 13. Frequency of Job Stress and Safety Education by Service Field	36

그 립 목 차

Fig 1. Mortality rate of death and Disaster occurrence rate	2
Fig 2. Accident Investigation Report	9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the Management for Preventing Public Officer's Accidents

Sangbum Seo

Department of Safety Engineering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Despite much effort being made to reduce the disaster rate, the rate of Public officer's accidents is on the rise. The rate of industrial accidents has steadily decreased from 0.59 to 0.48 over the past five years, but the rate of Public officer's accidents has steadily increased from 0.455 in 2014 to 0.497 in 2017, and the rate of death for Public officers has increased from 0.531 in 2015 to 0.884 in 2017. As the scope of compensation has been expanded and the system has been strengthened by the enactment of the Public officer's Accident Compensation Act from September 2018, the number of Public officers' disasters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due to non-working reasons. Compared to industrial accidents, management of Public officers' disasters is considered to be in a very poor stage. There are various types of jobs in public officers, so there are also various risks, but there is not enough data to analyze the causes of the accidents statistically. In addition, the

accident prevention program for Public officers is only a beginning stage, because of falling behind in scale and technology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n this study, the current status of the accident prevention projects for Public officers was analyz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The survey was conducted on a total of 778 people, and analyzed about the Public officer's Accident Compensation Act, education, and business for safety. And also it was divided by job category for further analysi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re were many Public officers who were not familiar with the Public officer Accident Compensation Act and they were burdened with work and equipment. Public officers which have high-risk such as police and fire fighters were actually aware of the risks themselves, and in each job, there were differences in accident prevention projects and programs that they hoped. In addition, education officers were found to have little or no accident prevention education and felt the most stressed out. It is believed that this study could raise public officials' awareness of the Public officer Accident Compensation Act and reduce the burden of job stress for each job.

제 I 장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세월호 사고 등을 포함하여 불안전상태 및 불안전행동에 따른 크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다른 안목으로 해석하자면 사회 구성원 개 개인의 안전태도는 크게 변한 바 없이 필요 시 경찰이나 소방 등 공무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공무원들의 업무량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공무원 재해의 발생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¹⁾.

Fig 1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산업재해발생률, 산업재해 사망만인률, 공무원재해발생률, 공무원 공무상 사망만인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산업재해 발생률과 산업재해 사망만인률은 최근 들어 조금 증가하였으나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공무원 재해발생률과 공무원 공무상 사망만인률은 12년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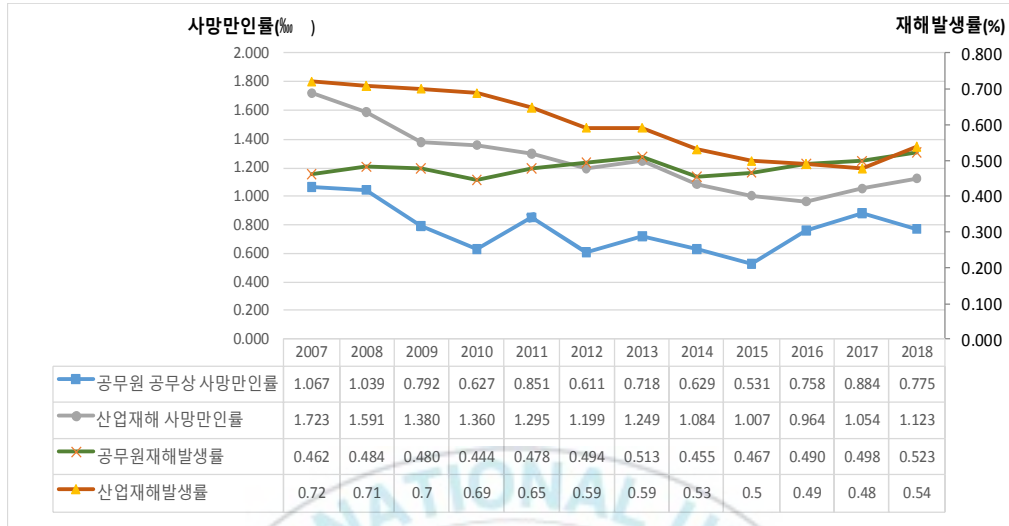


Fig 1. Mortality rate of death and Disaster occurrence rate

공무원 재해 보상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보험 가운데 가장 먼저 도입되어, 다른 모든 사회보험에 대하여 중요한 기준과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사회적 위험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²⁾. 특히, ‘공무원’이라는 범위가 불명확하여 실제 운영에서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³⁾. 2006년 순직·공상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위한 순직공무원보상법이 제정되면서 이전에 비해 부분적으로나마 개선되었고 2010년부터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아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시행되며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이는 미국이나 일본의 순직공상경찰관을 위한 지원 제도 정도에는 아직도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⁴⁾. 경찰, 소방 공무원을 포함하여 다른 공무원들의 공무원 재해보상은 1960년부터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이루어졌고 2018년 9월부터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시행되었다. 산재보험과 비교하였을 때, 재해를 당한 공무원의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보상에 관해서는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유리하지만 재해자의 요양, 장해, 재활 등과 관련해서는 산업재해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⁵⁾.

또한 산업재해에 비해 공무원 재해 예방에 대한 관리는 매우 미흡한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찰직 공무원의 경우 경찰 자체의 트라우마센터(마음동행센터), 소방직 공무원의 경우 소방심리지원단 등 특정 직종에서의 재해예방프로그램과 근로자건강센터, 공무원마음건강센터 등 국내 공무원 대상의 재해예방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는 있으나, 인력 및 규모 면에서 문제를 겪는 등 국내 민간 기관의 산업재해예방사업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직, 소방직 등의 위험 공무원재해예방프로그램은 미국, 일본 등 국외에 비해 규모 및 기술면에서 매우 낙후되어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¹⁾.

1.2 연구의 목적

공무원재해는 산업재해와 별도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 산업재해의 경우 직종별 각 위험요인에 따라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무원 재해의 경우 경찰, 소방직을 제외하고는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공무원재해와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제도 또한 다른 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개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재해 보상제도의 개선은 매우 느린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현직 공무원들의 재해 예방 및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Needs를 파악하여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및 재해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 II 장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재해 예방 제도에 대해 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현재 공무원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와 공무원 직종별 재해위험요인을 조사하였고 국내 민간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해예방 프로그램과 해외 공무원 재해예방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하였다.

국내 민간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해예방 프로그램은 국내 민간기업 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비롯하여 S사(전자), S사(반도체), H사(자동차), P사(철강), L사(화학)의 각 대기업을 대상으로 자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해외에서의 공무원재해 예방 프로그램 사례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의 선진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미국의 경찰직, 소방직 공무원, 일본의 소방직 공무원, 영국의 소방직 공무원, 프랑스의 전체 공무원 대상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직 공무원들의 공무원재해 보상제도에 대한 인식수준과 공무원들의 재해 예방 및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Needs 파악을 하였다. 설문조사는 현직 공무원들 총 77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지역별, 직종별로 구분하여 회수하였으며 집계 현황은 Table 1과 같다. 설문조사지는 공무원재해보상법 관련, 재해예방교육 및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 속성은 성별, 연령, 직종, 근무지역, 근무경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재해보상법 관련은 과거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재해보상을 받은 경험,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대한 인지 정도, 공무원재해보상법과 산재보상보험법의 대등 정도, 공무원 재해인정기준의 적절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해예방교육 및 사업은 수행하는 업무 및 장비에 대한 위험도, 직무 스트레스

를 느끼는 빈도, 최근 1년 이내 재해예방교육 이수 여부, 재해예방활동의 중요성, 교대근무 여부, 업무수행 중 유해위험요인, 공무원재해 예방을 위해 확대 또는 집중해야 할 분야 및 사업, 건강검진 관련, 희망하는 검진 및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설문 문항들의 결과 중 공무원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미비한 부분에 대해 분석하였고 추가적으로 직종별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환경에 따라 요구되는 항목을 분석하였다.



Table 1. Total status of survey respondents

(Unit: Person)

Section	Regular Govern- ment	Police	Fire fighter	Educa- tional	Tech- nical	Postal	Total
The Central Region	4	70	47	0	6	15	142
Honam Region	58	110	58	25	8	32	291
Yeong- nam Region	167	41	112	18	7	0	345
Total	229	221	217	43	21	47	778

제 III 장 연구 결과

3.1 현황 및 사례 분석

3.1.1 현황 분석

현재 국내 산업재해에 있어서 재해조사는 산업재해조사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Fig 2와 같이 체크식 혹은 단답형으로 이루어진 항목이 많아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를 쉽게 종합하고 분석할 수 있다6). 그에 비해, 공무원재해의 경우 재해조사는 별도의 서식없이 서술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발생형태 등을 나누지 않고 안전사고라는 단어 하나로 포괄하고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가 어렵다7). 이처럼 현재 공무원 상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규정 및 기준 등 제도적 기반은 부재한 상태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공무수행을 위한 정부와 각 기관, 공무원 개인의 의무와 책임이 불명확하고 공무원의 위험·유해상황을 해소하고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또한 미비한 상태이다.

예산에서도 재해예방 교육, 연구, 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 건강증진 지원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도 미확보된 상태이며 일부 기관이 자체적으로 재해예방 대책을 추진 중이나 산발적으로 운영되어 정부 차원의 종합적 추진체계는 부재하다1).

산업재해 조사표

※ 위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일부)

I.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 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⑥재해자가 파견근 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집단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⑦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 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 관리번호(사업개시 번호)			
	⑨공사종류	공정분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며,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추가로 작성한다.

II. 재해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국적	[]내국인 []외국인(국적:)	종취류자격	[]직업
	일사일	년 월 일	⑩같은 종류업무 근무 기간	년 월
	⑪고용형태	[]상용 []임시 []일용 []무급가족종사자 []차별업자 []그 밖의 사항 []		
	⑫근로형태	[]정상 []2교대 []3교대 []4교대 []시간제 []그 밖의 사항 []		
	⑬상해종류 (질병명)	⑭상해부위 (질병부위)	⑮휴업예상 일수	휴업 []일
		사망 여부	[]사망	

III.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⑯재해발생 개요	발생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발생장소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중재해발생원인	

IV. 재발 방지 계획	※ 위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 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	---	--------------------

작성자 성명	작성일자	년	월	일
작성일자 전화번호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작업지역 - 공장	기연물 □ 작업내용	□□□□ □□□□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용필지(80g/㎡)]

Fig 2. Accident Investigation Report

3.1.2 국내 민간기업 사례 분석

Table 2와 같이 국내 민간 기업과 해외 공무원은 각 직종별로 다양한 재해 예방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민간 기업 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매년 지출 예산의 100분의 8 이상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계상토록 함으로써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업종별 재해예방, 안전보건문화정착, 산재예방시설용자, 근로자건강보호, 유해작업환경개선 등 재해예방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1).

S전자의 경우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검증, 교육, 위험성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고 생산설비 밀폐, 작업장 환기, 누출센서 설치, 음압유지 등 작업환경을 관리하고 치과, 한의원, 물리치료, 정신건강, 근골격계질환 예방운동센터, 약국 등 다양한 사내 건강증진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BOOST(Burn out, Obesity, Overdrink, Smoking, Take-care group)을 운영하며 각종 건강진단, 비만관리, 스트레칭, 금연 지원, 고혈압, 당뇨 등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반도체 회사인 S사의 경우 예측 불가능한 안전, 보건, 환경 이슈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후관리가 아닌 서비스 제공이라는 개념이 강화된 예방 중심의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으로는 니코바이 프로그램(금연), 닥터 간 프로그램(절주), 팻바이 프로그램(비만), 웰니스 프로그램과 건강체조교실(운동), 그리고 휴 프로그램(정신건강)이 있다.

자동차 회사인 H사의 경우에는 화장실 내 금연벨 설치, 금연스트레스관리, 노사합동 캠페인 등의 금연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며 근골격계질환 휴업치료 및 운동 치료 프로그램도 시행 중이다. 한의원을 포함한 병원을 운

영 중이며 사내건강증진실, 사내재활증진실, 사외재활센터 등 운동지도 시설도 운영 중이다. P회사(철강)의 경우 건강이상자 관리, 야간교대작업자 보건관리, 근골격계질환 관리 등 보건관리 프로그램과 방사선 작업 관리, 분진 작업 관리, 소음관리 등의 환경관리 프로그램, 심리 상담사 카운슬링,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다. 또한 화학 회사인 L사의 경우에는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일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특수검진 대상 유해인자 노출자에 한해서는 특수, 배치전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만 35세 이상 또는 근속 5년 이상의 임직원들에 한해 종합검진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며 종합검진 비대상자 중 특수검진 대상자의 경우 추가 암검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연, 비만 등과 관련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민간기업에서는 사업장 특성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 비만, 절주 등을 포함한 건강관리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Disaster Prevention Program in Domestic Company

Company	Program	
KOSHA	Support Disaster Prevention Program	• Clean-business • Disaster Prevention By Industry • Safety and Health Culture settlement • Workers' Health Protection
S Company (Electronics)	Administrative Chemical material	• Pre-verification of Safety • Education on Toxicity • Risk Assessment
	Environment	• Ventilation in workplace • Leak sensor
	Health	• Health Promotion Facilities • Health Checkups • Mental Health Program
S Company (Semiconductor)	Health	• No smoking program • Antialcoholism Program • Obesity Program • Exercise program • Mental Health Program
H Company	Health	• No smoking program • Musculoskeletal disease • Clinic • Exercise facility
P Company	Environment	• Administration On Dust work • Administration On Noise
	Health	• Musculoskeletal disease • Physiotherapy clinic
L Company	Health Checkups	• General, Special, Before placement • Complete physical • Additional Cancer Screening

3.1.3 해외 공무원 사례 분석

Table 3은 선진국인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의 각국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해예방 프로그램의 예시이다. 미국의 경찰 공무원의 경우, 재해예방 프로그램을 상부에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경찰서별로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하는 재해예방 프로그램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자살예방, 자기관리 등의 정신건강 프로그램, 카운슬링(Counseling), 배우자 및 가족 건강 지원 등은 대부분의 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 사건이 발생한 후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 하는 대응 프로그램, 가족 등을 포함하는 카운슬링 프로그램 또한 대부분의 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미국의 소방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소방대원의 직업안전보건 및 복지에 관한 기준(NFPA 1500, Standard on Fire Department Occupational Safety, Health, and Wellness Program)을 각 주와 도시가 기준으로 채택하면 연방법 요구사항 준수와 동시에 법률효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적어도 3년마다 직업안전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직업안전보건위원회(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mmittee)와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서는 신체적 적합성(Fitness-for-Duty; FFD)에 관한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수립하여 구성원이 부여된 기능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적합성 수준을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⁹⁾ 2006년 미국의 국립순직소방관재단(National Fallen Firefighters Foundation; NFFF)에서는 사용장비 및 개인보호구의 인간공학적 평가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후 국립방화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The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 소방장비제조자협회(Fire Apparatus Manufacturers' Association; FAMA) 등이 협력하여 각종 자료를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각종 장비의 디자인, 사용성과 안전성을 인간공학적으로 평가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비영리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로 암, 정신건강, 건전성, 안전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하고 운영비는 지역사회의 자발적 기부로 운영되고 있다¹⁰⁾.

미국의 국제인간가치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Human Values; IAHV)에서는 교정직 공무원들의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형무소 프로그램(IAHV, Smart Prison)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교정직 공무원들의 스트레스도 심각한 수준이라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종업원지원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 EAP)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¹¹⁾.

일본 소방직 공무원의 경우 중앙정부에 의한 소방공무원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소방공무원으로 구분된다. ‘소방단원 등 공무재해보상 등 공제기금’은 지방의 소방공무원들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안전장비품 정비사업 및 개별건강지도사업 등의 ‘소방단원 공무재해방지활동 지원사업’, 체력 단련, 관련 지식 및 기술을 연마하는 우수 사례들을 수집하여 홍보하는 등의 ‘공무재해방지대책 조사연구사업’, 안전관리 및 건강만들기 세미나, 위험예지훈련 및 안전응급처치 연수 등의 ‘소방단원 공무재해방지 연수사업’, 공무 재해방지 대응 사례집, 아차사고 사례집 등을 출간하고 보급하는 ‘공무재해정보제공사업’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공무원 건강의 유지증진을 도모하면서 직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규칙 10-4(직원의 보건 및 안전유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강안전관리를 위한 조치가 실시하고 있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원이 종합적인 지도, 조정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유해업무 등의 업무에 관련된 조치, 건강진단, 업무환경 등에 관한 조치, 스트레스 체크 제도 등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담, 건강만들기 연수 등을 통해 심리적인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기계·기구, 긴급사태, 각종 설비에 대한 위험 등에 대한 안전유지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1).

일본의 지방공무원에 관한 제도로는 1967년부터 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 공포 및 전면시행이 이루어지고 2003년부터 지방공동법인화가 되었으며 학교급식, 청소, 병원, 경찰 등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재해방지에 관한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자금조성 등을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다1).

영국의 소방직 공무원의 경우, 소방 및 응급의료 서비스 직원 관련 직무 건전성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해당 작업자가 본인은 물론, 동료, 재산, 대중들의 안전이나 건강을 위협하지 않고 자신이 담당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상태를 측정하고 있다12).

프랑스의 경우 노동법(제 L.4121-1조, L.4121-2조)으로 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으며 직업위험평가, 사회심리적 재해예방, 의료 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또한, 국가공무최고회의(Conseil supérieur de la fonction publique de l'État)의 위생안전 노동조건중앙위원회(Commission Centrale Hygiène, Sécurité et Conditions de Travail; CCHSCT)는 수준 높고 실용적인 직업위험평가고유서류(Document Unique d'Évaluation des Risques Professionnels; DUERP)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권고사항들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방 공무원 직업위험평가 관련 의무 사항에 관한 법령과 의료 공무원 직업위험평가 관련 의무 사항에 관한 법령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공공 기관의 책임자들에 의해 작성, 발표되는 문서로 소속 공무원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직업상의 위험과 재해들이 열거

되어 있다13).

이처럼 해외에서는 국가에서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국제적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고 법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에 따라 재해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뿐만 아니라 지자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isaster Prevention Program in Advanced Country

Country	Field	Disaster Prevention Program	Note
USA	Police	• Suicide Prevention • Self Management Program • Counseling • Taking Action	Voluntary (Each Police Officer)
	Fire Fighter	• Safety, Health and Wellness Program • Fitness-for-Duty Program • Support Safety Assessment of Equipment • Voluntary Participation (Nonprofit Organization)	International
	Rectification	• Prison Program	
Japan	National	• Health/Mental Health Program	
	Local	• Support Each Program	
	Fire Fighter	• Maintenance Business for Safety Equipment • Seminar	Managed by Local Government
UK	Fire Fighter	• Testing Fitness for Duty	
France	-	• Labor Law(L.4121-1, L.4121-2) • Occupational Risk Assessment • Social Psychology Prevention • Health Checkups	

3.2 설문조사 분석

3.2.1 응답자 속성

설문에 응한 응답자의 속성은 Table 4와 같다. 설문조사는 총 7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성별, 근무지역, 근무경력, 연령, 직종에 따라 구분하였다. 성별은 남자가 628명(80.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연령대는 30대, 40대, 50대가 각각 231명(29.7%), 239명(30.1%), 234명(30.1%)으로 비슷하였으며 20대는 74명(9.5%)으로 비교적 적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229명(29.4%), 경찰직 221명(28.4%), 소방직 217명(27.9%), 교육직 43명(5.5%), 기능직 21명(2.7%), 우정직 47명(6.1%)으로 나타났다. 근무지역은 총 3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중부권 142명(18.3%), 호남권 291명(37.4%), 영남권 345명(44.3%)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이 5년 이하는 194명(24.9%), 6~10년은 127명(16.3%), 11~15년은 103명(13.3%), 16~20년은 80명(10.3%), 20년 이상은 274명(35.2%)으로 나타났다.

Table 4. Survey Responder's Properties

Responder Properties		Number of Respondents (person(%))
Gender	Male	628(80.7)
	Female	150(19.3)
Working area	The central region	142(18.3)
	Honam region	291(37.4)
	Yeongnam region	345(44.3)
Work experience	5 years or less	194(24.9)
	6 to 10 years	127(16.3)
	11 to 15 years	103(13.3)
	16 to 20 years	80(10.3)
	More than 20 years	274(35.2)
Age	20's	74(9.5)
	30's	231(29.7)
	40's	239(30.7)
	50's or more	234(30.1)
Service Field	Regular Government officer	229(29.4)
	Police officer	221(28.4)
	Firefighter	217(27.9)
	Educational officer	43(5.5)
	Technical officer	21(2.7)
	Postal officer	47(6.1)

3.2.2 공무원재해보상법 분석

공무원재해보상법과 관련하여 설문조사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공무원재해보상법과 관련하여 크게 재해보상을 받은 경험,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대한 인지 정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비교하였을 때 대등한 정도, 공무원재해보상법 재해인정기준의 적절성으로 구분하였다.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 재해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체의 78명(10.0%), 경험이 없는 사람이 699명(89.9%)으로 대체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 78명 중 만족이 20명(25.6%), 보통이 32명(41.0%), 불만족이 19명(24.4%)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19명(2.4%)에 불과했으며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125명(16.1%), 들어본 적만 있는 사람이 266명(34.2%), 전혀 모르는 사람이 367명(47.2%)으로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상보험법과 비교하였을 때 대등한 정도로는 잘 모르겠다가 438명(56.3%)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인정기준은 적절하다가 64명(8.2%), 보통이 189명(24.3%), 적절하지 않다가 203명(26.1%), 잘 모르겠다가 321명(41.3%)으로 나타났으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대한 인지도가 전체적으로 낮았으며 만족도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Questions and Results Related to Public Officer's
Accident Compensation Act**

Survey Content		Number of Respondents (person(%))
Accident Compensation Experience	Yes	78(10.0)
	No	699(89.9)
	No response	1(0.1)
Recognition of the Public Officer Accident Compensation Act	Know in detail	19(2.4)
	Know roughly	125(16.1)
	Have heard of it	266(34.2)
	Have no idea	367(47.2)
	No response	1(0.1)
Comparison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Law	Very equal	4(0.5)
	Equal	51(6.6)
	Normally Equal	159(20.4)
	Not equal	78(10.0)
	Not equal at all	47(6.1)
	Have no idea	438(56.3)
	No response	1(0.1)
Adequacy of Accident Recognition Standards	Very Appropriate	4(0.5)
	Appropriate	60(7.7)
	Normally Appropriate	189(24.3)
	Not Appropriate	128(16.5)
	Not Appropriate at all	75(9.6)
	Have no idea	321(41.3)
	No response	1(0.1)

3.2.3 재해예방교육 및 사업 분석

설문응답자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 및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위험을 느끼는 정도는 Table 6과 같다.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위험도에 대한 응답 결과로 위험하다가 306명(3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통이 241명(31.0%), 매우 위험하다가 137명(17.6%) 순으로 대다수가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소 사용하는 장비의 위험성 및 부담감에 대한 응답 결과로 부담스럽다가 282명(36.2%), 보통이 272명(35.0%), 매우 부담스럽다가 101명(13.0%) 순으로 대다수가 장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느끼는 빈도는 Table 7과 같다. 가끔이 392명(50.4%)으로 가장 많았고 자주가 239명(30.7%), 거의 항상 75명(9.6%)을 차지하여 대체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은 10명(1.3%)에 불과하였다. 스트레스의 요인으로는 타인 대응이 239명(28.5%)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Risk of Work and Equipment

Survey Content		Number of Respondents (person(%))
Risk of Work	Very dangerous	137(17.6)
	Dangerous	306(39.3)
	Normal risk	241(31.0)
	Not dangerous	80(10.3)
	Not dangerous at all	12(1.5)
	No response	2(0.3)
Risk of Equipment	Very Burdensome	101(13.0)
	Burdensome	282(36.2)
	Normally Burdensome	272(35.0)
	Not Burdensome	92(11.8)
	Not Burdensome at all	30(3.9)
	No response	1(0.1)

Table 7. Frequency of Job Stress

Survey Content		Number of Respondents (person(%))
Frequency of Job Stress	Always	75(9.6)
	Often	239(30.7)
	Sometimes	392(50.4)
	Rarely	52(6.7)
	Never	10(1.3)
	No response	10(1.3)



설문응답자 중 업무 또는 장비와 관련하여 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인식 수준 및 재해예방교육을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현황은 Table 8과 같다. 재해 예방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80명(48.8%)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여 약 95%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재해예방교육을 최근 1년 이내 이수한 사람은 382명(49.1%)으로 절반도 되지 않았다. 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인식 수준에 비해 실제로 재해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사람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예방활동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544명에 의하면 교육/홍보, 제도/환경 개선 및 건강 증진이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예방교육을 이수한 382명 중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32명(34.6%)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70% 이상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다. 효과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설문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교육내용과 교육효과를 지적하였다.

Table 8. Importance of Accident Prevention Activities and Safety Education

Survey Content		Number of Respondents (person(%))
Importance of Accident Prevention Activities	Very important	164(21.1)
	Important	380(48.8)
	Normally important	195(25.1)
	Not very important	23(2.9)
	Not important at all	10(1.3)
	No response	6(0.8)
Safety Education	Yes	382(49.1)
	No	394(50.6)
	No response	2(0.3)

앞으로 공무원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현직 공무원들의 의견은 Table 9와 같다. 분야, 사업 및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각 항목들은 국내 민간기업과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공무원 재해예방을 위해 확대 또는 집중해야 할 분야로 공무상 사고 예방이 전체의 50%를 차지하였다. 질병과 건강 질환 등에 비해 공무원들은 사고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으로써 근무환경 개선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현재 근무환경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희망하였고 맞춤형 헬스프로그램, 심리적 카운슬링, 특수건강검진, 해외연수 등을 순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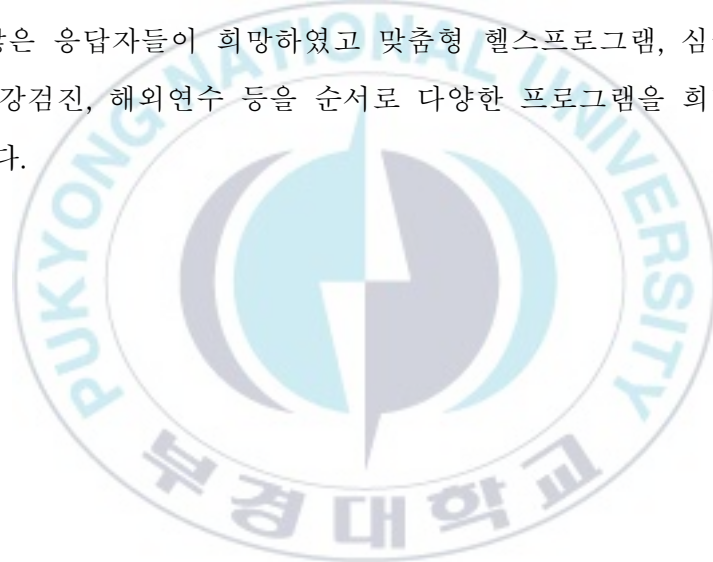


Table 9. Needs to Accident Prevention (Multiple Response)

Survey Content		Number of Respondents (person(%))
Field	Prevent accident	416(50.0)
	Prevent Disease	200(24.1)
	Health Checkup	200(24.1)
	Other	12(1.4)
	No response	3(0.4)
	Total	831(100)
Business	Education and promotion	100(12.3)
	Establishment of management standards	107(13.2)
	Work environment improvement	430(52.8)
	Health Checkup Activities	168(20.6)
	Other	3(0.4)
	No response	6(0.7)
Program	Total	814(100)
	Frequent checkups	75(6.6)
	Frequent Special Health Checkups	136(12.1)
	Psychological counseling	139(12.3)
	Stress management	347(30.8)
	Customized fitness program	265(23.5)
	Overseas training	131(11.6)
	Other	15(1.3)
	No response	20(1.8)
	Total	1128(100)

3.2.4 직종별 분석

직종별 분석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의 유의확률을 구하기 위해 IBM SPSS Statistics 25를 이용하여 일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전체 설문조사 778부의 결과에서는 공무원 재해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절반 이상(52.8%)이 ‘재해예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을 선택하였다. 또한, ‘정신/스트레스 등 사전 건강검진 활동’,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 기준 마련’,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순으로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직종별로 구분하였을 때 Table 10과 같이 결과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직의 경우,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 기준 마련’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직의 경우 근무환경 개선에 비해 건강검진 활동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직의 경우 교육 및 홍보 사업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와 ‘무응답’,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 기준 마련’을 제외한 ‘교육 및 홍보’, ‘근무환경 개선’, ‘사전 건강검진 활동’은 $p<0.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가로 희망하는 검진이나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전체 설문조사 778부의 결과,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높았으며 맞춤형 헬스프로그램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호도에 있어서 경찰직, 교육직, 기능직 등에서 직종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직 공무원의 맞춤형 헬스프로그램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고 교육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비율이 43.5%로, 두 번째로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맞춤형 헬스프로그램(17.7%)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직 공무원은 잦은 특수건강검진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

왔으나 $p>0.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찾은 정기검진’, ‘심리적 카운슬링’, ‘스트레스 관리’, ‘맞춤형 헬스프로그램’은 $p<0.05$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직종별 응답자수 및 비율은 Table 11과 같다.



Table 10. Needs to Accident Prevention by Service Field
(Business, Multiple Response)

(Unit: Person(%))

Survey Content		Service Field						Total
		General Service	Police	Fire fighter	Educ-ational	Tech-nical	Postal	
Business	Education and promotion	35 (14.1)	25 (11.2)	20 (8.9)	6 (13.6)	8 (32.0)	6 (12.5)	100 (12.3)*
	Establishment of management standards for accident prevention	29 (11.7)	22 (9.8)	45 (20.0)	3 (6.8)	2 (8.0)	6 (12.5)	107 (13.1)
	Work environment improvement	138 (55.6)	114 (50.9)	127 (56.4)	15 (34.1)	10 (40.0)	26 (54.2)	430 (52.8)*
	Prior Health Checkup Activities	44 (17.7)	61 (27.2)	29 (12.9)	20 (45.5)	4 (16.0)	10 (20.8)	168 (20.6)*
	Other	1 (0.4)	2 (0.9)	0 (0)	0 (0)	0 (0)	0 (0)	3 (0.4)
	No response	1 (0.4)	0 (0)	4 (1.8)	0 (0)	1 (4.0)	0 (0)	6 (0.7)
Total		248 (100)	224 (100)	225 (100)	44 (100)	25 (100)	48 (100)	814 (100)

(*: p<0.05)

Table 11. Needs to Accident Prevention by Service Field
(Program, Multiple Response)

(Unit: Person(%))

Survey Content		Service Field						Total
		General Service	Police	Fire fighter	Educ-ational	Tech-nical	Postal	
Program	Frequent checkups	30 (9.1)	24 (7.1)	11 (3.5)	3 (4.8)	4 (13.8)	3 (4.9)	75 (6.6)*
	Frequent Special Health Checkups	58 (17.7)	37 (11.0)	25 (8.0)	3 (4.8)	7 (24.1)	6 (9.8)	136 (12.1)
	Psychological counseling	37 (11.3)	50 (14.9)	34 (10.9)	10 (16.1)	2 (6.9)	6 (9.8)	139 (12.3)*
	Stress management	107 (32.6)	86 (25.6)	101 (32.4)	27 (43.5)	6 (20.7)	20 (32.8)	347 (30.8)*
	Customized fitness program	67 (20.4)	95 (28.3)	74 (23.7)	11 (17.7)	5 (17.2)	13 (21.3)	265 (23.5)*
	Overseas training	18 (5.5)	42 (12.5)	57 (18.3)	5 (8.1)	3 (10.3)	6 (9.8)	131 (11.6)
	Other	2 (0.6)	2 (0.6)	6 (1.9)	2 (3.2)	0 (0)	3 (4.9)	15 (1.3)
	No response	9 (2.7)	0 (0)	4 (1.3)	1 (1.6)	2 (6.9)	4 (6.6)	20 (1.8)
Total		328 (100)	336 (100)	312 (100)	62 (100)	29 (100)	61 (100)	1128 (100)

(*: p<0.05)

Table 12와 같이 경찰직, 소방직, 기능직 공무원은 다른 직종에 비해 평소 수행하는 업무 및 사용하는 장비가 더 위험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하는 업무의 경우 경찰직, 소방직, 기능직 공무원은 60% 이상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위험’과 ‘전혀 위험하지 않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우 위험-위험’, ‘보통’, ‘위험하지 않음-전혀 위험하지 않음’ 3단계로만 나누어 보았을 때에는 $p<0.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직, 소방직, 기능직 공무원은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50% 이상이 부담스럽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다른 직종에 비해 교육직 공무원은 업무 및 장비가 위험하거나 부담스럽지 않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매우 부담스러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매우 부담스러움-부담스러움’을 한 항목으로 본다면 $p<0.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3과 같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체 공무원(778명) 중 절반 정도(50.4%)가 ‘가끔’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년 내에 재해예방교육을 이수한 인원과 이수하지 않은 인원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직 공무원의 경우 스트레스를 ‘가끔’ 느끼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직종에 비해 스트레스를 느끼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교육직 공무원은 최근 1년 동안 재해예방교육은 대다수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직무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다고 인지하는 비율이 다른 직종에 비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두 직종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재해예방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이 다른 직종에 비해 10%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직무 스트레스 빈도에 대한 항목들 중 ‘전혀 없다’와 ‘무응답’을 제외하고는 $p<0.05$ 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년 이내 재해예방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항목들은 ‘무응답’을 제외하고 $p<0.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2. Risk of Work and Equipment by Service Field

(Unit: Person(%))

Survey Content		Service Field						Total
		General Service	Police	Fire fighter	Educ-ational	Tech-nical	Postal	
Risk of Work	Very dangerous	24 (10.5)	57 (25.8)	44 (20.3)	0 (0)	4 (19.0)	8 (17.0)	137 (17.6)
	Dangerous	85 (37.1)	87 (39.4)	96 (44.2)	11 (25.6)	10 (47.6)	17 (36.2)	306 (39.3)*
	Normal risk	85 (37.1)	54 (24.4)	53 (24.4)	26 (60.5)	7 (33.3)	16 (34.0)	241 (31.0)*
	Not dangerous	29 (12.7)	23 (10.4)	17 (7.8)	6 (14.0)	0 (0)	5 (10.6)	80 (10.3)*
	Not dangerous at all	4 (1.7)	0 (0)	7 (3.2)	0 (0)	0 (0)	1 (2.1)	12 (1.5)
	No response	2 (0.9)	0 (0)	0 (0)	0 (0)	0 (0)	0 (0)	2 (0.3)
Total		229 (100)	221 (100)	217 (100)	43 (100)	21 (100)	47 (100)	778 (100)
Risk of Equipment	Very burdensome	25 (10.9)	46 (20.8)	26 (12.0)	1 (2.3)	2 (9.5)	1 (2.1)	101 (13.0)
	Burdensome	82 (35.8)	75 (33.9)	93 (42.9)	8 (18.6)	9 (42.9)	15 (31.9)	282 (36.2)*
	Normally Burdensome	79 (34.5)	75 (33.9)	73 (33.6)	17 (39.5)	9 (42.9)	19 (40.4)	272 (35.0)*
	Not burdensome	32 (14.0)	21 (9.5)	16 (7.4)	12 (27.9)	1 (4.8)	10 (21.3)	92 (11.8)*
	Not burdensome at all	10 (4.4)	4 (1.8)	9 (4.1)	3 (7.0)	0 (0)	2 (4.3)	28 (3.6)*
	No response	1 (0.4)	0 (0)	0 (0)	2 (4.7)	0 (0)	0 (0)	3 (0.4)
Total		229 (100)	221 (100)	217 (100)	43 (100)	21 (100)	47 (100)	778 (100)

(*: p<0.05)

**Table 13. Frequency of Job Stress and Safety Education by
Service Field**

(Unit: Person(%))

Survey Content		Service Field						Total
		General Service	Police	Fire fighter	Educ-ational	Tech-nical	Postal	
Frequency of Job Stress	Always	20 (8.7)	31 (14.0)	11 (5.1)	8 (18.6)	0 (0)	6 (12.8)	76 (9.8)*
	Often	76 (33.2)	68 (30.8)	60 (27.6)	16 (37.2)	10 (47.6)	9 (19.1)	239 (30.7)*
	Sometimes	109 (47.6)	101 (45.7)	128 (59.0)	18 (41.9)	8 (38.1)	28 (59.6)	392 (50.4)*
	Rarely	20 (8.7)	15 (6.8)	11 (5.1)	0 (0)	3 (14.3)	3 (6.4)	52 (6.7)*
	Never	2 (0.9)	1 (0.5)	6 (2.8)	0 (0)	0 (0)	1 (2.1)	10 (1.3)
	No Response	2 (0.9)	5 (2.3)	1 (0.5)	1 (2.3)	0 (0)	0 (0)	9 (1.2)
Total		229 (100)	221 (100)	217 (100)	43 (100)	21 (100)	47 (100)	778 (100)
Safety Education	Yes	140 (61.1)	111 (50.2)	86 (39.6)	7 (16.3)	14 (66.7)	24 (51.1)	382 (49.1)*
	No	88 (38.4)	110 (49.8)	131 (60.4)	35 (81.4)	7 (33.3)	23 (48.9)	394 (50.6)*
	No Response	1 (0.4)	0 (0)	0 (0)	1 (2.3)	0 (0)	0 (0)	2 (0.3)
Total		229 (100)	221 (100)	217 (100)	43 (100)	21 (100)	47 (100)	778 (100)

(*: p<0.05)

제 4 장 결 론

공무원 재해 보상제도는 사회보험 중 가장 먼저 도입되어 최근 공무원재해보상법까지 점차 발전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재해 발생률이나 산업재해 사망만인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공무원 재해 발생동향은 증가세에 있다. 또한, 공무원재해보상법의 경우 현직 공무원들에게 인지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실정이며 산재보상보험법과 대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대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아 공무원 재해 보상제도는 더 발전되어야 하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무원 재해와 관련하여 재해 발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Tool이 미비하여 구체적인 재해 발생 현황을 알기 힘들기 때문에 현황에 대한 통계 분석을 위한 Tool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는 현황 분석과 동시에 추후 공무원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조사표와 같이 체크식 혹은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기존 공무원재해 통계집에서 사고 유형의 항목인 안전사고라는 큰 범위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발생형태, 작업유형 등에 따른 재해 예방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인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기관 간·기관 내 관리감독 체계, 재해예방 사업운영 전담 조직 등도 구축되어야 한다.

수행하는 업무와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대체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많았으며 위험 공무원 직종 외에도 자신의 직종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직종별로 잠재적으로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재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현직 공무원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종별로 수행하는 업무 및 사용하는 장비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하여 위험 요소가 큰 부분에 대해 별도의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공무원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그 빈도 또한 높은 편이다.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므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 및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민간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각종 시설을 운영하고 문화의 날을 포함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민간 기업에서는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각 직종별로 공무원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국제적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지역공무원들의 재해예방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을 만큼 사회 구성원들의 호응도 크며, 일본의 경우에는 지역공무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국가공무원을 위한 프로그램보다 다양하다. 현재 국내 공무원 재해 예방 프로그램은 근로자건강센터, 공무원마음건강센터, 교원치유지원센터 등을 포함하여 직종별로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면에서나 기술면에서 매우 낙후되어 있다. 공무원들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직종별로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건강검진 활동 등의 사업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직종에 따라 다양한 건강검진, 심리적 카운슬링, 헬스프로그램, 해외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재해 예방을 위해 피로 관리 프로그램,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 호흡기질환 및 유해가스

중독 예방 프로그램, 직업성 암 예방 프로그램 등을 직종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인지도와 만족도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한 재해예방 사업 중 클린사업을 예시로, 7,581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클린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만족도 또한 80%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이에 대한 결과로 산재발생 건수가 줄어들었다. 이처럼 공무원 재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인지하고 만족할 수 있는 재해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14).

본 연구에서의 한계점은 성별, 연령, 직종, 근무지역, 근무경력의 각 집단 별로 설문조사에 응한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은 모수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현재 근무지역, 근무장소 등에 따라 별도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 및 프로그램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또한, 실제 국내 공무원 직종별 비율과 설문조사에 응한 공무원들의 직종별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현황을 분석하며 추가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공무원 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현황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대처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는 공무원재해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서둘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GEPS), “Exploring a New Accident Prevention Project to Build the Foundation of Accident Prevention for Public Officers”, 2019.
2.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A study of Improvement in the Civil Service’s Accident Compensation”, 2016.
3. J.S. Kim and C.L. Jung, “A study of Improvement in the Civil Service’s Accident Compens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al Security Association, Vol.33, No.4, pp.57-82, 2017.
4. H.K. Shin and J.I. Kim, “Civil Service Disaster Compensation Act for the Improvement of the Welfare of Police Officer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e Welfare Studies, Vol.6, No.1, pp.3-30, 2018.
5.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GEPS), “Accient Compensation System and Statistic Status“, 2019.
6.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2018
7.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GEPS), Current Status of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and Statistics, 2019
8. Colleen Copple, James Copple, Jessica Drake, Nola Joyce, Mary-Jo Robinson, Sean Smoot, Darrel Stephens, and Roberto Villaseñor, Law Enforcement Mental Health and Wellness Programs: Eleven Case Studies, Office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 Washington, DC., USA, 2019

9. W.M. Cody, Evaluating Fitness-For-Duty: Fire Service Financial Management, Los Angeles Fire Department, 2001
10. <https://www.floridafirefightersafety.org/>
11. <http://www.prisonprogram.org/>
12. Fitness for Duty Implementation in Combination Fire and EMS Agencies, Chesterfield County Fir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2008
13. <https://www.fonction-publique.gouv.fr/document-unique-devaluation-des-risques-professionnels-duerp>
14. D.C. Bae,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through Consumer Survey of Financial Support Programs for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ol.33, No.4, pp.62-71, 2018.

부 록

공무원재해예방 신규사업 개발을 위한 공무원 수요조사

1. 응답자 속성

1. 성별

☐ 남

☐ 여

2. 연령

☐ 20대

☐ 30대

☐ 40대

☐ 50세 이상

3. 직종

☐ 별정직

☐ 일반직

☐ 경찰직

☐ 소방직

☐ 교육직

☐ 기능직

☐ 공안직

☐ 법관, 검사

☐ 우정직

☐ 기타

4. 귀하의 주 근무 지역은 어디입니까?

☐ 서울

☐ 경기, 인천

☐ 강원, 충청

☐ 호남

☐ 영남

☐ 제주

5. 근무경력

☐ 5년 이하

☐ 6~10년

☐ 11~15년

☐ 16~20년

☐ 20년 이상

2. 공무원재해보상법 관련

1. 귀하는 과거에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재해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 ☐ 1. 있다. ☐ 2. 없다.

1-1. 보상받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보상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 1. 매우 만족 ☐ 2. 만족 ☐ 3. 보통 ☐ 4. 불만족 ☐ 5. 매우 불만족

1-2. '매우 만족' 또는 '만족'스럽다고 답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략히 기술)

1-3. '불만족'이나 '매우 불만족'이라고 답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 보상절차의 어려움 ☐ 2. 보상금액의 불만족 ☐ 3. 보상방식의 불만족
☐ 4. 공상 인정기준 부적절 ☐ 5. 기타 (간략히 기술)

2. 귀하는 2018년도 신설된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대하여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 ☐ 1. 상세히 알고 있다. ☐ 2.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 3. 들어본 적만 있다. ☐ 4. 전혀 모른다.

3. 귀하는 현재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재해보상법의 내용이 일반 산업현장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산재보상보험법의 내용과 비교할 때 대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매우 대등하다 ☐ 2. 대등하다. ☐ 3. 보통이다. ☐ 4. 대등하지 않다.
☐ 5. 전혀 대등하지 않다. ☐ 6. 잘 모르겠다.

4. 귀하가 아는 한, 현재 공무원 재해발생시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매우 적절하다 ☐ 2. 적절하다. ☐ 3. 보통이다. ☐ 4. 적절하지 않다.
☐ 5. 전혀 적절하지 않다. ☐ 6. 잘 모르겠다.

4-1. '적절하지 않다'거나 '전혀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 공무상 부상/질병(정신질환 포함) 인정 기준의 부적절
☐ 2. 보상급여의 부족/불만족
☐ 3. 공무상 부상/질병 치료기간의 부적절
☐ 4. 공상 공무원의 사후관리 부족
☐ 5. 기타 (간략히 기술)

3. 재해예방교육 및 사업

1. 귀하는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평소 얼마나 위험하다고 느끼십니까?
☐ 1. 매우위험 ☐ 2. 위험 ☐ 3. 보통 ☐ 4. 위험하지 않음 ☐ 5. 전혀 위험하지 않음
2. 귀하는 평소 업무에 사용하는 장비가 얼마나 위험 또는 부담스럽다고 느끼십니까?
☐ 1. 매우 부담 ☐ 2. 부담 ☐ 3. 보통
☐ 4. 부담스럽지 않음 ☐ 5. 전혀 부담스럽지 않음
3. 귀하는 평소 업무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느끼시는 일이 자주 있으십니까?
☐ 1. 거의 항상 ☐ 2. 자주 ☐ 3. 가끔 ☐ 4. 거의 없다 ☐ 5. 전혀 없다

3-1. 스트레스를 느끼신다면 어떤 요인이 가장 부담스러우십니까?

- ☐ 1. 타인 대응 ☐ 2. 근력 발휘 ☐ 3. 기술/지식 ☐ 4. 작업 환경
☐ 5. 불규칙한 근무시간
☐ 6. 기타 (간략히 기술) _____

3-2. 스트레스를 느끼신다면 평소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십니까? <중복체크 가능>

- ☐ 1. 음주 ☐ 2. 흡연 ☐ 3. 운동 ☐ 4. 게임
☐ 5. 기타 (간략히 기술) _____

4. 귀하는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 또는 장비와 관련하여 재해예방교육을 최근 1년 동안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 1. 있다. ☐ 2. 없다.

4-1. 공무원 재해예방교육을 받으셨다면 1년에 몇 번 받으셨습니까?

- ☐ 1. 1회 ☐ 2. 2회 ☐ 3. 3회 ☐ 4. 4회 ☐ 5. 5회 이상

4-2. 공무원 재해예방교육을 받으셨다면 1년에 총 몇 시간 받으셨습니까?

- ☐ 1. 1~2시간 ☐ 2. 3~4시간 ☐ 3. 5~8시간 ☐ 4. 9~15시간 ☐ 5. 16시간 이상

4-3. 교육이 공무원 재해예방을 위해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 매우 효과적이다. ☐ 2. 효과적이다. ☐ 3. 보통이다.
☐ 4. 효과적이지 않다. ☐ 5.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4-4. '효과적이지 않다' 또는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응답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 강사의 수준 ☐ 2. 교육내용 ☐ 3. 교육시간 ☐ 4. 교육효능
☐ 5. 기타 (간략히 기술) _____

5. 소속기관이나 관계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홍보, 제도/환경 개선 및 건강증진 등 재해예방활동이 귀하의 안전을 위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중요하다 ☐ 2. 중요하다. ☐ 3. 보통이다. ☐ 4. 별로 중요하지 않다.
☐ 5. 전혀 중요하지 않다.

6. 야간근무나 교대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 ☐ 1. 예 ☐ 2. 아니오

6-1. 야간근무나 교대근무를 하신다면, 근무교대 사이 휴식시간은 충분하십니까?

- ☐ 1. 매우 충분하다 ☐ 2. 충분하다 ☐ 3. 충분하지도 부족하지도 않다.
☐ 4. 부족하다 ☐ 5. 매우 부족하다

7. 평소 식사시간은 규칙적이십니까 ?

- ☐ 1. 규칙적이다 ☐ 2. 불규칙하다

7-1. '규칙적' 이시라면, 식사시간은 얼마나 할애하십니까?

- ☐ 1. 15분 미만 ☐ 2. 15~30분 ☐ 3. 30~45분 ☐ 4. 45분 이상

8. 귀하의 업무수행 중 자신의 몸에 해롭다고 생각되는 유해위험요인들은 무엇입니까?

- ☐ 1. 범죄/사건 ☐ 2. 화재/폭발/사고 ☐ 3. 유해위험물질 (분진, 방사능 포함)
☐ 4. 작업환경 ☐ 5. 자연환경 ☐ 6. 불규칙한 근무시간
☐ 7. 기타 (간략히 기술) _____

9. 공무원 재해예방을 위해 확대 또는 집중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 공무상 사고 예방
☐ 2. 공무상 질병 예방
☐ 3. 정신질환 등 건강증진 활동
☐ 4. 기타 ()

10. 공무원 재해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2.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 기준 마련
☐ 3. 재해예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 4. 정신/스트레스 등 사전 건강검진 활동
☐ 5. 기타 ()

11. 귀하가 받아보신 건강검진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중복체크 가능>

- ☐ 1. 일반정기검진 ☐ 2. 특수건강검진 ☐ 3. 기타 ()

12. 귀하는 개인적으로 수검한 건강검진을 포함해서 건강검진을 얼마나 자주 받으십니까?

- ☐ 1. 2년에 한 번 ☐ 2. 1년에 한 번 ☐ 3. 6개월에 한 번 ☐ 4. 기타 ()

13. 추가로 희망하는 검진이나 프로그램이 있으십니까 ? <중복체크 가능>

- ☐ 1. 잦은 정기검진 ☐ 2. 잦은 특수건강검진 ☐ 3. 심리적 카운슬링
☐ 4. 스트레스 관리 ☐ 5. 맞춤형 헬스프로그램 ☐ 6. 해외연수
☐ 7. 기타 ()

-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향상된 재해예방사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